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표 준 협 약 서

○ 협약 당사자

창업지원기관: 사단법인 커뮤니티와경제 (대표자: 정홍규)
창업지원기관: 소셜비즈니스디자인 협동조합 (대표자: 김왕의)
창 업 팀: 사회복지디자인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 이연주)

○ 사 업 명: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 협약기간: 2026년 5월 18일 ~2026년 12월 31일

○ 사 업 비: 총 이천오백만원(25,000,000원)

* 협약금액의 사업비는 25,000,000 원으로 한다. 단, 창업팀
중간평가 등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협약을 변경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은 다음과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사업화 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창업 성공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창업팀은 협약서, 사업화계획서 및 사업비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창업팀은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창업지원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사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창업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창업팀 육성업무의 수행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 지원 및 관리)

1.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창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화 계획서 및 창업팀이 집행한 내역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 및 조치가 필요할 경우, 창업팀에게 안내해야 하며 창업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창업지원기관은 용역사업비와 창업팀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구분하여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창업팀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창업지원기관은 사업비 지출을 중단하고 사업비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창업팀은 사업비로 '창업팀 지원금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기자재의 취득 시점부터 5년간 자산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또한, 협약종료 후에도 1년 간 기자재 관리 현황(사진 포함)을 분기별로 창업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자재 취득 시점부터 5년간 창업팀이 기자재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창업팀에 해당 금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1. 창업지원기관은 협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따라 창업팀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창업팀은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시기별 사업추진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창업지원기관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창업지원기관의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창업팀은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종료 이전에 창업 완료 및 최종평가 기준을 달성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 창업팀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창업지원기관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창업지원기관은 즉시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하고, 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중간평가) 창업지원기관은 협약기간 중 창업팀의 사업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중간평가 결과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사업목표 달성이 부실한 경우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유 발생 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관련자료 제출 등) 창업팀은 창업지원기관, 고용노동부 및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변경)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은 창업팀의 중간평가 결과로 인한 협약변경 및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진흥원의 조치에 따라 협약의 변경에 임해야 한다.

제8조(협약해지 등)

1. 창업지원기관은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창업팀에 대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추후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에게 5일 이내에 진흥원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 결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정산)

1. 창업팀은 매월 사업비 정산내역과 사업비 사용계획서를 창업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창업지원기관은 즉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운영지침의 집행 잔액 처리원칙에 따른다.
3. 협약기간 이후에도 창업팀 지원금 정산을 위해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지원금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은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장)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성과물의 활용)

1. 연구보고서 등의 발행시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협의 하에 달리 결정할 수 있다.
2. 사업화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시에는 창업

지원기관과 창업팀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에 의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3. 당해 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은 창업팀의 소유로 하되 필요시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12조(관계법령의 준수)

1.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지원금 회계처리 기준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지원금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창업지원기관과 창업팀은 변경된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의가 있을 때는 진흥원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는 창업지원기관, 창업팀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026년 5월 18일

창업지원기관명: 사단법인  사회혁신지원센터와경제

대표자: 정흥규

주 소: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97, 1층(봉덕동)

창업지원기관명: 소셜비즈니스디자인 협동조합

대표자: 김왕의

주 소: [41910] 대구 중구  북성로 160, 6층(북성로 1가, 대구스테이션센터)

창업팀명: 사회복지디자인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 이연주

주 소: [41569] 대구 북구  창대로5길 10, 5층(대현동, 동우빌딩)